

2026년 제약바이오벤처 협업기반 기술개발사업 업무지원기관 모집 공고

중소벤처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6년 제약바이오벤처 협업기반 기술개발사업 업무지원기관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신청방법에 따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.

2026년 5월 12일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

1. 공고개요

공고목적

- 신약 AI 자문, 전략수립, 투자 연계 등 제약바이오 특화지원 전문성을 보유한 업무지원기관을 통해 R&D 성과 제고·확산

* AI기반후보물질탐색, 신약파이프라인공동개발 총 30개 신규과제 선정 예정('26.7월)

** 업무지원기관 :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운영요령 제32조 제3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수행 업무의 지원을 위해 지정(공모선정 포함)한 별도의 기관이나 단체

모집규모 : 1개 기관

* 필요시 2개 기관 이상으로 구성된 컨소시엄 형태도 가능

모집대상 : 제약바이오 분야 중소기업의 AI 활용, 개발전략, 규제대응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사업화 지원 역량을 보유한 비영리법인

운영기간 : 지원과제 협약체결일(2026.7.1.예정)로부터 최대 3년간

* AI기반후보물질탐색(R&D) : '26.7.1.~'28.6.30. (20개 과제, 과제별 최대 10억원·2년 이내)

** 신약파이프라인공동개발(R&D) : '26.7.1.~'29.6.30. (10개 과제, 과제별 최대 30억원·3년 이내)

□ **운영예산** : 총 1,110백만원(과제당 37백만원 x 30개 과제)

○ (지급방식) 주관연구개발기관(중소기업)이 연구개발비로 직접 연차별 지급

< 연차별 지급금액 >

(단위 : 개, 백만원)

구분		'26년	'27년	'28년	'29년	합계
시 기반 후보물질탐색	과제수	20	20	20	-	20
	연차별 금액	13	12	12	-	37
< 소 계 >		260	240	240	-	740
제약파이프라인 공동개발	과제수	10	10	10	10	10
	연차별 금액	9.25	9.25	9.25	9.25	37
< 소 계 >		92.5	92.5	92.5	92.5	370
<연차별 합계>		352.5	332.5	332.5	92.5	1,110

* 전문기관(TIPA)이 업무지원기관에 직접 지급하는 별도 운영비는 없으며, 실제 운영 예산은 과제수, 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

** 직접비만 계상 가능하며, 간접비는 계상 불가

○ (실적보고) 내역사업별 종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사업운영 최종 보고서 및 예산 집행내역서, 정산보고서를 전문기관에 제출

2. 신청자격 및 제한 요건

□ **신청자격**

○ 제약바이오 분야 중소기업의 AI 활용, 개발전략, 규제대응 및 글로벌 시장 진출 등 사업화 지원 역량을 보유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기관(컨소시엄시 소속기관 모두 요건 동일)

구분	세부내용
기관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부부처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부처 소관 비영리 법인 최근 3년 이내('22~'25)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관리 또는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실적이 있는 기관
인력요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담인력 상근자 2명 이상(책임자 1명, 실무자 1명)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인력으로 구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책임자)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수행(관리) 이력이 3년 이상 (실무자)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수행(관리) 이력이 1년 이상 * 기타 이에 준하는 경력 및 능력을 갖췄다고 평가위원회에서 인정될 경우 인력 요건을 충족했다고 갈음할 수 있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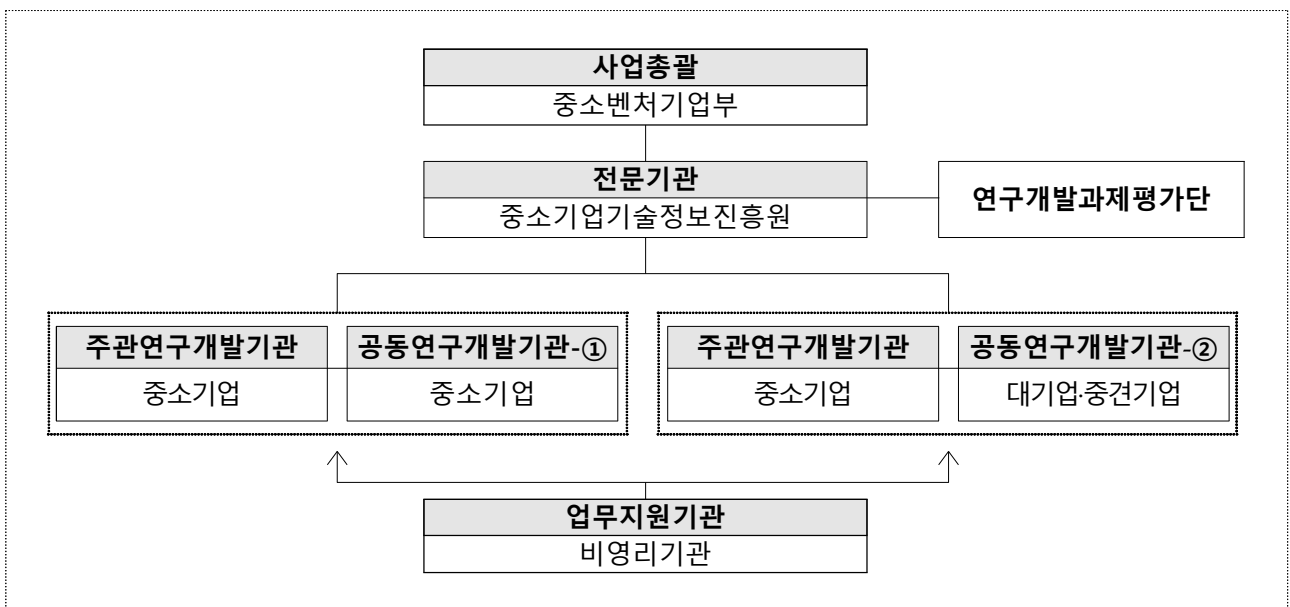
□ **제한요건**

- 접수 마감일 기준 다음 조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은 선정 평가 대상에서 제외

요건	세부내용
휴·폐업	•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
세금체납	• 국세·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
채무불이행	•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
금융규제	•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,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•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경우
고용노동부 정보공개대상	• 채불사업주 명단(고용노동부)에 공개된 경우 •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(고용노동부)으로 공표된 경우
참여제한	• 중소기업벤처기업부 관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• 최근 5년간 중소기업벤처기업부 또는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협약해약, 지원중단 등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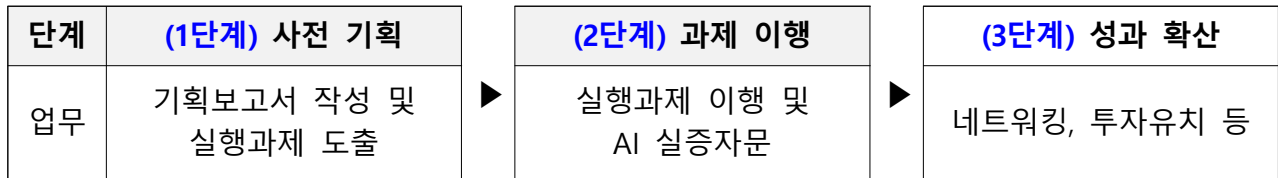
3. 업무지원기관 과업범위

□ **추진체계**



□ 업무지원기관 과업범위

○ 과업체계도



① (1단계) 사전 기획

- (공통)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계획서 검토 및 개별 면담을 통해 1차년도 종료 전('26년 말)까지 과제별 기획보고서 제작·제출
 - 기술개발전략, 시장분석, 사업화 전략 등 기업별 맞춤형 (비)임상 및 규제·인허가 사전 전략 수립

<기획보고서 주요 내용>

구 분	주요내용(안)
기업 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업 현황(회사소개 및 사업현황, 경영현황, 보유기술 및 제품 개요 등) • 기술개발 및 사업화 역량(주요 기술개발 실적, 지식재산권, 기술이전 및 사업화 실적 등)
기술개발 전략 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내외 시장 동향 분석(시장트렌드, 경쟁사, 규제정책 환경 분석, 주요 수요처 등) • 역량 및 취약점 분석(기술개발 역량, 인허가, 글로벌 진출 방안 등)
실행과제 도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업별 맞춤형 (비)임상 및 규제·인허가 로드맵(일정, 목표, 절차) 도출 • 사업화 보완 및 개선방안, 글로벌 진출 방안 보완 방법 등

② (2단계) 실행과제 이행

- (공통) 사전기획에서 도출한 실행과제(중소기업이 개발한 신약 후보 물질의 글로벌 진출을 위한 기업별 맞춤형 (비)임상 및 규제·인허가 지원 등) 이행
 - (임상·규제전략) 임상·규제대응 전문기관의 컨설팅을 통해 비임상·임상 등의 실행 준비사항 등을 분석 및 제안

- 비임상부터 임상1상 진행까지의 대상질환 분석, 임상로드맵, 예상비용, 규제기관 허가전략 등을 수립 지원
- 물질에 적합한 질환 후보군, (비)임상 용법·용량, 독성, 안전성, 시험 설계 및 규제·IND 대응 방향 제안 등
- **(AI기반후보물질탐색)** **(AI실증자문)** AI-실험 간 단절 등 신약개발 과정에서 AI 적용 시 발생하는 문제 해결 등 자문지원
- **(기술자문)** AI 신약개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5인 이상의 전문가 그룹의 과제별 기술 성숙도에 따라 단계별 자문
 - * 기술자문 : 분기별 1회씩 연 4회

③ (3단계) 성과 확산

- 국내외 제약사·투자사·전문기관 등의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내외 IR·파트너링 행사 및 기술이전계약 자문지원
- **(네트워킹)** 국내외 제약·바이오 유관기관과 함께, 글로벌 제약사와 국내 바이오텍 간 협력을 위한 컨퍼런스 등 개최
 - * 컨퍼런스 : 반기별 1회씩 연 2회
- **(투자유치)** 국내외 제약사,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IR 행사를 개최하고, 제약바이오 특화 법무법인이 제공하는 법률자문 지원
 - * IR 행사 : 반기별 1회씩 연 2회

④ 기타

- **(기타)** 본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업 홍보, 통계 분석 등 전문기관이 요청하는 사항 등

4. 신청기간 및 방법

□ 신청기간

○ '26. 5. 12.(화) ~ '25. 5. 28.(목), 18:00까지

- 신청·접수기간 마감 이후 제출서류의 보완 및 교체 절대 불가

* 단, 전문기관이 자격 검토 등을 위한 추가 또는 보완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예외

□ 신청방법

○ 전자우편(lab@tipa.or.kr)으로 신청서류 일체 제출

- 지정된 전자우편 외 일반 우편, 방문 접수 불가하며, 신청서류 일체는 열람 오류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"PDF 형식"으로 제출 요망

□ 제출서류

연번	제출서류명	비고
1	업무지원기관 신청 공문	기관직인 날인 필수
2	업무지원기관 신청서	양식 1
3	업무지원기관 사업계획서 ※ 30페이지 이내 작성(별첨 제외)	양식 2
4	신청자격 및 제한요건 확인서	양식 3
5	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양식 4
6	사업추진 실적증명서	양식 5
7	사업자등록증(고유번호증) 및 법인등기부 등본	
8	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	
9	전담인력 관련 증빙서류*	
10	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증**	해당시

* (既 채용인력) 경력(재직)증명서, 4대 보험 가입증서, (신규 채용예정 인력) 채용자격 요건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서 제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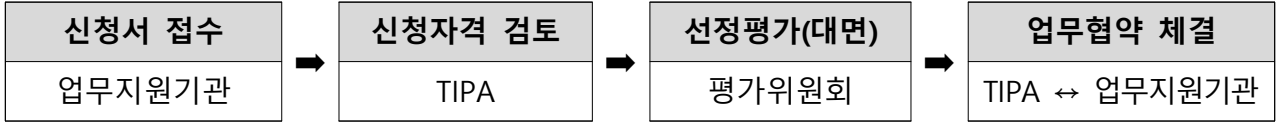
** 소관 부처 시행규칙 등에 의해 발급되는 허가증으로 제출하되,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변경사항까지 확인할 수 있는 허가증 제출

*** 발표자료는 선정평가 전 별도 제출안내 예정

5. 평가방법 및 기준

□ 평가절차

- 신청자격 검토 후 선정평가(발표평가)를 통해 최종 선정



□ 평가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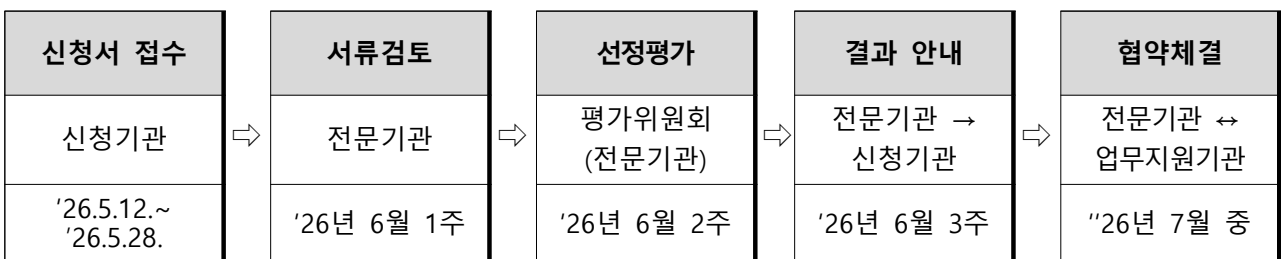
- (신청자격 검토) 신청기관의 자격요건 충족여부, 서류 제출여부 및 증빙자료 등 검토
 - 공고문에 기재된 신청자격 기준 부합 여부 및 서류 제출 여부를 적합·부적합으로 판정
 - (선정평가) 외부전문가 5명 내외로 평가위원회를 구성,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 후 종합점수 순위에 따라 선정
 - (선정평가 방식) 신청기관이 제출한 운영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
 - * 15분 발표, 20분 질의응답
 - (종합점수 산출) 위원별 점수 합계에서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후 산술평균한 점수에 가점을 합산하여 최종 종합점수*를 산출
 - * 종합점수 산출 시 소수점이 발생할 경우,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
- | |
|--|
| $\text{종합점수} = \frac{\text{위원별 점수 합계} - (\text{최고점수} + \text{최저점수})}{\text{평가위원 수} - 2}$ |
|--|
- (평가기준) 기관현황, 운영계획 적정성, 국내외 네트워크 보유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
 - 종합점수 기준 동점 발생시 ①운영계획(70점), ②국내외 네트워크(20점), ③기관현황(10점) 점수가 높은 순으로 업무지원기관 선정

- 종합점수가 60점 이상 기관을 선정하며, 60점 미만인 기관은 종합 점수 순위에 관계없이 선정에서 제외함

* 종합점수 60점 이상 기관이 모집규모(1개)를 초과하는 경우, '지원후보'로 분류하며, 최초 선정된 기관이 수행포기, 부적격 사유 발생시 대체선정할 수 있음

평가항목	평가 내용	배점
기관현황 (10)	• 신청기관의 유사 정부지원사업 관리 및 운영 경험	5
	•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의 적정성(전문성, 수행능력 등)	5
운영계획 (70)	• 제약바이오벤처 협업기반 기술개발사업 특성 및 업무지원기관 과업 이해도	20
	• 전반적인 운영계획의 구체성 및 합리성	20
	• 지원 프로그램의 적정성 및 다양성	30
국내외 네트워크 (20)	• 국내외 인프라 및 네트워크 보유 현황 및 협력관계 우수성	20

6. 추진일정(안)



*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, 변동 발생 시 신청기관에 별도 안내 예정

7. 유의사항

- 신청서, 운영계획서 등 제출서류 상의 허위내용 기재 사실 확인 시, 선정 및 협약 취소, 정부지원금 환수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
-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

-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, 신청기관 미확인(연락불능), 연락처 오기 및 착오 등으로 인한 평가 불참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
- 필요시 업무지원기관 연차별 수행실적에 대한 연차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, 평가결과가 미흡할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
- 적격한 기관이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

8. 문의사항

-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창업성장사업실**
 - (담당자 내선번호) 044-300-0552, 0558
 - (담당자 메일주소) bsk0128@tipa.or.kr , redjinhyeouk@tipa.or.kr

붙임 1. 사업설명자료

붙임 2. 신청 서식

[서식 1] 업무지원기관 신청서

[서식 2] 업무지원기관 운영계획서

[서식 3] 업무지원기관 신청자격 및 제한요건 체크리스트

[서식 4] 기관(기관장)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동의서

[서식 5] 수행실적증명서

□ **사업목적**

- 신약개발 중소기업의 신약개발 연구현장에 맞춤형으로 AI기술을 도입 및 활용하여, 선도물질을 신속하게 발굴
 - 제약중소-신약AI중소간 컨소시엄을 통해 AI 기술로 신약개발 병목구간 애로를 해결할 수 있는 신약 후보물질 탐색 협업 R&D과제 지원

□ **지원대상** : 신약개발 중소기업(주관) 및 신약AI솔루션 중소기업(공동) 컨소시엄

□ **지원규모** : '26년 신규 20개, 과제당 최대 2년, 10억원, 자유공모

□ **지원내용**

- (컨소시엄 매칭) 사업 공고기간 중 매칭데이(가칭)를 통해 신약개발중소기업과 신약AI솔루션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
- (R&D 지원) 중소기업이 신약개발 초기단계에서 직면한 현장난제를 중심으로, AI 기반 예측 및 실험기술을 연계한 실증형 R&D 지원
- (성과활용·확산) 신약 AI 자문, 전략수립, 투자 연계 등 제약바이오 특화지원 전문성을 보유한 업무지원기관을 통해 R&D성과제고·확산

□ **사업목적**

- 제약바이오벤처와 제약사 간 공동연구개발 협력체계 구축으로 신약 파이프라인 고도화 및 개방형 혁신 생태계 활성화
 - 선도물질의 최적화 및 전임상 시험을 통한 후보물질 검증 등 신약 후보물질 발굴을 위한 제약바이오벤처-제약사 간 협력 R&D지원

□ **지원대상** : 제약바이오벤처(주관) 및 중견 이상 제약사(공동 또는 위탁) 컨소시엄

□ **지원규모** : '26년 신규 10개, 과제당 최대 3년, 30억원, 품목지정*

* 중견제약사가 공동연구를 원하는 후보물질 개발 영역에 대한 기술수요조사를 기반으로 구체화된 품목개요서 기획·공고

□ **지원내용**

- **(컨소시엄 매칭)** 사업 공고기간 중 매칭데이(가칭)를 통해 신약개발중 소기업과 신약AI솔루션 중소기업 간 컨소시엄 구성을 지원
- **(R&D 지원)** 선도물질의 최적화 및 전임상 시험을 통한 후보물질 검증으로 IND(임상시험계획서) 진입수준까지 신약파이프라인 고도화
 - * (제약바이오벤처) 기술제안, 선도물질 최적화, 후보물질 검증 등 R&D 수행
 - (제약사) 신약 파이프라인 수요제안, 신약개발역량 공유(인프라, 노하우 등), 협업 R&D 수행
- **(성과활용·확산)** 비임상·임상·규제인허가 전략수립, 투자 연계 등 제약 바이오 특화지원 전문성을 보유한 업무지원기관을 통해 R&D성과제고·확산

[양식 1]

2026년 제약바이오벤처 협업기반 기술개발사업 업무지원기관 신청서

기 관 개 요	기관명	<i>컨소시엄일 경우 : (컨소시엄 대표기관 or 공동기관) 00000 단독신청일 경우 : 000000만 기입</i>			
	홈페이지		설립일	년 월 일	
	사업자번호		법인번호		
	기관유형 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공공기관 <input type="checkbox"/> 대학 <input type="checkbox"/> 연구기관 <input type="checkbox"/> 협·단체 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()			
	주소				
	책임자	성명		생년월일	
		전화		직위	
		핸드폰		전자우편	
	실무자	성명		생년월일	
		전화		직위	
핸드폰			전자우편		

중소벤처기업부가 시행하는 2026년도 제약바이오벤처 협업기반 기술개발사업
업무지원기관으로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.

20 년 월 일

대표자 : (인)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

**2026년 제약바이오벤처 협업기반 기술개발사업
업무지원기관 운영계획서**

작성일자 :

<대표기관>

기관명 :

대표자 : (인)

<공동기관>

기관명 :

대표자 : (인)

목 차

I. 기관 개요	0
1-1. 기관 현황 및 연혁	0
1-2. 프로그램 제공계획	0
1-3.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계획	0
1-4. 유사사업 수행·운영 현황	0
II. 과제 지원 운영계획	0
2-1. 추진전략 및 체계	0
2-2. 운영 목표(성과목표)	0
2-3. 지원 및 관리계획	0
2-4. 추진일정	0
2-5. 예산 편성내역	0
III. 국내외 협력 현황	0
3-1. 국내외 네트워크 현황 및 협력 체계	0
3-2.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지원 계획	0
[참고1]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	0
[참고2]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	0
[참고3]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	0
[참고4] ○○○○○○○○○○	0

I. 기관 개요

1-1. 기관 현황 및 연혁

<대표기관>

기관명		대표자명			
설립일	0000. 00. 00.				
주소					
전담인력구성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여 (명) <input type="checkbox"/> 부 (채용예정일:)				
연혁	▶ ▶ ▶ ▶ ▶ ▶ ▶				
기관재무구조 (백만원)	구분	'23	'24	'25	
	총 자산				
	자기자본				
상시인력	박사	석사	학사	고졸	합계
주요 사업분야					

작성방법

※삭제 후 제출

- 1) 전담인력 구성여부 : 책임자(겸직 가능) 및 실무자로 전담인력 2명 이상 구성된 경우 '여' 선택, 계획일 경우 '부' 선택 후, ()안에 계획일자 등을 작성

<공동기관>

기관명		대표자명													
설립일	0000. 00. 00.														
주소															
전담인력부 구성여부	<input type="checkbox"/> 여 (명) <input type="checkbox"/> 부 (채용예정일:)														
연혁	▶ ▶ ▶ ▶ ▶ ▶ ▶														
기관재무구조 (백만원)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구분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'23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'24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'25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총 자산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tr> <td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자기자본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구분	'23	'24	'25	총 자산				자기자본			
구분	'23	'24	'25												
총 자산															
자기자본															
상시인력	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head> <tr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박사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석사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학사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고졸</th> <th style="text-align: center;">합계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td>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		박사	석사	학사	고졸	합계							
박사	석사	학사	고졸	합계											
주요 사업분야															

1-2. 프로그램 제공계획(요약, 1페이지 이내)

- (1단계) 사전기획
- (2단계) 실행과제 이행
- (3단계) 성과 확산

작성방법

※삭제 후 제출

- 1) 프로그램 제공계획 : 과업범위(1,2,3단계)에 대한 요약(1페이지 이내) 기술

1-3. 전담조직 및 인력 구성 계획

작성방법

※삭제 후 제출

- 1) 조직도 : 예시의 표를 참고하여 작성(전담인력 담당자별 담당 업무를 구체적으로 작성)
- 2) 전담조직은 책임자(겸직 가능) 포함 2명 이상의 전담인력으로 구성
- 3) 전담조직 구성 계획 : 전담조직 내 역할, 관련경력(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수행(관리), 근속기간 등을 정확하게 작성하고, 확보 예정인 인력의 성명은 '채용예정'으로 명시
 - 채용예정 인력은 모집 공고의 전담인력 정의로 제시한 요건에 부합한 인력으로 선정 통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채용
 -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, 표에 기재된 인력은 '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'를 작성하여 제출
- 4) 컨소시엄 구성시 소속기관별 각각 작성

증빙서류

※삭제 후 제출

- 1) 사업화 인력 업무분장표
- 2) 전담인력 인사명령 문서(근무기간 명기), 전담인력 재직증명서 등 전담인력의 고용 여부 확인이 가능한 서류(겸직인력의 경우 겸직 인사명령 문서 등으로 증빙)

□ 조직도

※ 기관 조직도내 사업화 지원 전담조직 표기
(그림, 도표 가능)

□ 인력 구성 계획

○ 00명 구성 완료, 00명 채용 예정

성명	직위	최종학력			전담조직 내 역할	근속기간 (개월)
		학교	전공	학위		
		대학		학사		
		대학원		석사		
		대학원		박사		

- 책임자 세부 인적사항

기본사항			
성 명		생년월일	
소속부서		직위/직책	
상근여부		전화번호	
휴 대 폰		전자우편	

학력사항			
연도	학교	전공	학위
2024~2025			

경력사항			
연도	소속기관	직위/직책	수행업무
2024~2025			

- 실무자 세부 인적사항

기본사항			
성 명		생년월일	
소속부서		직위/직책	
상근여부		전화번호	
휴 대 폰		전자우편	

학력사항			
연도	학교	전공	학위
2024~2025			

경력사항			
연도	소속기관	직위/직책	수행업무
2024~2025			

1-4. 유사사업 수행·운영 현황

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수행(관리) 관련 실적

사업명	추진기간	시행부처	지원예산 (단위:백만 원)	지원대상 수 (단위:개사)	수행역할
합계	총 00개 운영		00,000	00	

작성방법

※삭제 후 제출

1) 기관에서 최근 3년간('23년~'25년) 추진한 국가연구개발사업(R&D), 사업화 지원 운영 실적을 기재

증빙서류

※삭제 후 제출

1) 협약서 등 사업 운영 기간, 지원 대상, 내용 등이 확인 가능한 서류

□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실적

사업유형	사업명	추진기간	지원예산 (단위:백만 원)	지원대상 수 (단위:개사)	수행역할
합 계		<i>총 00개 운영</i>	<i>00,000</i>	<i>00</i>	

작성방법

※삭제 후 제출

- 1) 기관에서 최근 3년간('23년~'25년) 추진한 중소기업의 사업화 지원 실적을 기재
- 2) 사업유형은 정부/민간/자체로 구분하여 표기

증빙서류

※삭제 후 제출

- 1) 협약서 등 사업 운영 기간, 지원 대상, 내용 등이 확인 가능한 서류

II. 과제 지원 운영 계획

2-1. 추진전략 및 체계

2-2. 운영 목표(성과목표)

2-3. 지원 및 관리계획

2-4. 추진일정

2-5. 예산 편성내역

- *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(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)를 참조하여 편성하되, 간접비는 계상 불가

III. 국내외 협력 현황

3-1. 국내외 네트워크 현황 및 협력 체계

3-2.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한 기업 지원 계획

업무지원기관 신청자격 및 제한요건 체크리스트

(해당/비해당 여부를 √ 로 반드시 표기)

구분	세부내용	해당여부	
		해당	미해당
신청 자격	기관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비영리 법인(컨소시엄 가능) 최근 3년 이내('23~'25)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 및 관리 또는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실적이 있는 기관 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	인력요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담인력 상근자 2명 이상(책임자 1명, 실무자 1명)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인력으로 구성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책임자)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수행(관리) 이력이 3년 이상 (실무자) 국가연구개발사업 또는 중소기업 사업화 지원 수행(관리) 이력이 1년 이상 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제한 요 건	휴·폐업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	세금체납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세·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	채무불이행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중인 경우 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	금융규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융기관을 통한 계좌개설이 불가능하거나, 금융자산에 대한 압류가 진행 중인 경우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거래자로 규제 중인 경우 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	고용노동부 정보공개 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채불사업주 명단(고용노동부)에 공개된 경우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(고용노동부)으로 공표된 경우 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	참여제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중소벤처기업부 관련 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 중인 경우 최근 5년간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부터 협약해약, 지원중단 등에 해당하는 제재를 받은 경우 	<input type="checkbox"/>	<input type="checkbox"/>

2026년 월 일

신청기관명:

대표자:

(날인)

기관(기관장)정보 수집 · 이용 · 제공 동의서

본 기관(기관장)은 제약바이오벤처 협업기반 기술개발사업 업무지원기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서 평가관리를 위하여 기관(기관장)정보를 수집·이용·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○ 수집·이용 목적

- ✓ 기관 참여제한,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및 기타 사전지원제외, 사후관리 대상 여부의 확인

○ 수집항목(기관정보) : 기관명, 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번호, 기관구분, 기관주소 및 대표번호, 설립년월일, 업태 및 업종, 종업원 수, 자산/자본 총계 등

○ 수집항목(기관장정보) : 기관장 성명, 주민번호, 연락처, 주소 등

○ 정보 보유·이용 기간 :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기관(기관장) 정보 수집·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

○ 관련근거 : 과학기술기본법, 방송통신발전기본법, 정보통신산업진흥법, 정보통신진흥기금 운용관리 규정, 기금 사업 협약체결 및 사업비 관리 등에 관한 지침, 기금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지침 등

※ 유의사항 :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해당 수집 항목은 업화 업무지원기관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6년 사업화 업무지원기관 공모에 신청할 수 없음

동의함

동의하지 않음

○ 기관(기관장)정보의 제3자 제공

- 목적 :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정부지원과제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, 국가 연구개발사업 등 정부지원과제 관련 타 전문기관의 동일업무 수행

- 제공받는 자 : 중소벤처기업부·국회 등 정부기관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정부지원 과제 관리기관, 국가 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(NTIS),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, 한국평가데이터(KODATA)

- 제공항목 : 기관명, 사업자등록번호, 법인번호, 기관구분, 기관주소 및 대표번호, 설립년월일, 업태 및 업종, 종업원수, 자산/자본 총계, 재무제표 등

- 제공받는 자의 보유·이용 기간 :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기관(기관장)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달성 시까지

- 관련근거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,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

※ 유의사항 :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해당 수집 항목은 정부지원과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6년 사업화 업무지원기관 공모에 신청할 수 없음

동의함

동의하지 않음

2026년 월 일

신청기관명:

대표자:

(날인)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 귀하

개인정보 수집 · 이용 · 제공 동의서

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은 개인정보를 중요시하며, 「개인정보보호법」 제15조, 제17조,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.

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, 동의 여부를 체크 ·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

-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
 - ✓ 참여제한 등 기타 사전지원 제외, 사후관리 대상 여부를 확인
-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
 - ✓ 개인 성명, 생년월일, 성별, 주민등록번호, 근무기관, 주소, 전화번호, 전자우편, 학력(학교, 전공, 학위, 연구분야 등), 정부지원과제 수행실적
- 개인정보 보유·이용 기간 :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
- 관련근거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,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

※ 유의사항 :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해당 수집 항목은 사업화 업무지원기관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2026년 사업화 업무지원기관 공모에 신청할 수 없음

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

- 고유식별정보 처리 목적
 - ✓ 참여제한 등 기타 사전지원 제외, 사후관리 대상 여부를 확인
-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 항목 : 주민등록번호, 과학기술인등록번호
- 고유식별정보 보유 · 이용 기간 :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·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
- 관련근거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,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, 지역산업육성사업 운영요령, 지역산업육성사업 관리지침 등

※ 유의사항 :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해당 수집 항목은 정부지원과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지원과제 참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

-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
 - ✓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정부지원과제 참여제한 여부 확인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: 중소벤처기업부·국회 등 정부기관,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등 정부지원 과제 관리기관,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(NTIS),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(IRIS), 한국평가데이터(KODATA)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: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정부지원과제 참여의 적법성 판단
-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: 성명, 소속기관, 생년월일, 성별, 주민등록번호, 주소, 연락처, 전자우편 등
-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· 이용 기간 :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제3자 제공목적 달성시까지
- 관련근거 : 국가연구개발혁신법,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,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관리지침 등

※ 유의사항 :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. 해당 수집 항목은 정부지원과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지원과제 참여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동의함 동의하지 않음

* 총괄책임자를 포함하여 사업계획서상 모든 참여인력에 대해 작성

[양식 5]

수행실적증명서							
신 청 인	업체명			대 표 자			
	영업소재지			전화번호			
	사업자번호			법인등록번호			
	증명서 용도	심사 제출용	제 출 처				
실적내용	사 업 명			구 분	유지관리·운영위탁() 컨설팅 () 기타 ()		
	사업개요						
	계약번호	계약일자	계약기간	계약금액 (VAT 포함)	수행 또는 납품실적		
					완료일자	지분율(%)	실적(원)
위 사실을 증명함.							
증 명 서 발급기관						년 월 일	
	기관명:	(인) (전화번호:)					
	주 소:						
	발급부서:	담당자 :		(전화번호:)			

[주]

1.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(기성 포함)된 실적이어야 하며,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
2.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,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
3.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,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